

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83
----------	-----

제출년월일 : 2020.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촌진흥법」에 따라 우리 군 농업인의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군 농산물 소비자와 우리군으로 귀농.귀산.귀촌을 하려는 국민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되는 농업인교육관의 운영 방안을 갖추어 우리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 농업교육 대상 및 선발, 강사 위촉 및 수당, 경비의 지원, 교육실 적관리 등 (안 제4조 ~ 제12조)
- 라. 농업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 등 (안 제13조 ~ 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에 159.5백만원 반영되었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0.08.05. ~2020.08.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실-8976, 2020.07.22.)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실-8976, 2020.07.22.)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복지과-40189, 2020.07.06.), 의견수용(기술지원과-5668, 2020.07.31.)

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
에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교육 지원 및 평창군 농업교육관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교육”이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에 인력 육성과 농촌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평창군 농업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이란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0(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농업 교육 전용 건물
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농업 발전
과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
력해야 한다.

- ② 군수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과 군민 등이 농업에 필
요한 기술과 농촌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농업교육) ① 군수는 교육 과정의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다. 이 경우, 수요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농업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현장)교육을 병행하여 교육관에서 진행하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된 타부서 및 기관의 교육을 포함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생 선발) ① 군수는 교육과정별 교육생 선발 및 학사규정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을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자는 해당 교육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교육대상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이 확정된 사람은 기일 안에 교육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교육생 선발이 취소될 수 있다.

제6조(강사의 위촉) 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농업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업업무 담당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강사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교육에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 식비(1일 4시간 이상의 교육에만 한정한다)

2. 현장학습 및 연수 등에 따른 여비 및 임차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및 교재제작·구입, 재료비 등

제9조(교육생 연수) 군수는 교육의 목적 달성과 성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는 성평등한 교육운영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이수, 교육이수자 우대 및 관리) ① 군수는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 교육 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 중 교육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

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의 자료는 최대 5년까지 관리하고, 증명서 발급의 자료로 활용한다.

제12조(교육 훈련사업) ① 군수는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이고 쾌적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 훈련사업 실시에 필요한 교육장 시설 및 교육장비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관의 사용 및 대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농업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교육관을 농업교육 외의 목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② 교육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 할 경우 또한 같다.

제14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교육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교육관의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 망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교육관의 유지 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교육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교육관 사용 중에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때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1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교육관의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기준	사용시간	비고
오전	08:00 ~ 13: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2:00	

② 교육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고, 사용료는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수납한다.

제17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군에서 교육관을 사용을 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한다.

②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농어업회의소에서 각 단체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교육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한다.

③ 군내 농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서 농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육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한다.

제18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관의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
3. 허가사용일 10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
4. 허가사용일 5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반액 반환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평창군 농업교육관 사용료(제16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고
대강당	오전	50,000	1. 1회 단가임 2. 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및 공휴일의 사용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오후	50,000	
	야간	100,000	
조리실습실	오전	50,000	1일(09:00 ~ 21:00)
	오후	50,000	
	야간	100,000	
소회의실	오전	20,000	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및 공휴일의 사용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오후	20,000	
	야간	40,000	

[붙임]

관련 법령 발취

□ 농촌진흥법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
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 조성 및 자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들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농촌진흥사업 협조)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家族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농·경영기법의 개발과 벤처농업 등을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한다.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제7조(강사수당등의 지급), 제8조(경비의 지원), 제9조(교육생의 연수), 제10조(교육의 위탁)

- 교육과정 개설 및 진행에 따른 강사비, 교구재, 교육관운영비 등의 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존 실시중인 교육사업의 지원근거의 명문화와 신규 교육과정 개설 및 지원근거 마련
- 교육진행 및 교육관 사용 : 200회/년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 20회/1년
 - 화,수,목요일의 오후 주교육과정 편성 : 60회/년
 - 6개 농업인 학습단체 정기 사용 : 60회/1년
 - 30개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사용 : 60회/1년

나. 추계 결과(연간)

- 세입 : 기존 실시 교육 과정의 지장이 없는 1주 1회 사용 시
 - 주간 4시간 사용 100천원 * 50회 = 5,000천원
- 세출

내역	산출기초	예산액(천원)	비고
합계		159,500	
농업경쟁력 강화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40,000	201-01
	농업인평생교육 2개과정	48,000	
	중앙 및 도단위 교육 참석자 여비 지원	10,000	301-09
	농업인 교육 장비 구입	5,000	405-01
농업인대학 (시군센터운영)	농업인대학 운영비	18,000	201-01

내역	산출기초	예산액(천원)	비고
지원(보조)	농업인대학 현장연수 지원	6,000	301-09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운영비	9,500	201-01
기초영농기술교육(보조)	기초영농기술교육 현장 견학 지원	3,000	301-09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지원(보조)	품목별 단기교육 일반 수용비	20,000	201-01

다. 재원조달 방안 : 2020년 당초예산 편성, 2021년도 교육관 운영(전기, 가스, 수도 등)비 예산 반영 필요.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연락처	(033) 330 - 1304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5,000	5,000	5,000	5,000	20,000
	교육관사용료 수입		5,000	5,000	5,000	5,000	20,000
세 출		159,500	176,500	176,500	176,500	176,500	865,500
	농업경쟁력 강화교육	103,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583,000
	농업인대학 (시군센터운영) 지원(보조)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신규농업인(귀농.귀 촌)기초영농기술교 육(보조)	12,500	12,500	12,500	12,500	12,500	
	농업기술원, 농업기 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지원(보조)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재원 조달		159,500	176,500	176,500	176,500	176,500	865,500
의존 재원	소 계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142,500
	보조금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142,5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31,000	148,000	148,000	148,000	148,000	723,000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131,000	148,000	148,000	148,000	148,000	723,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